#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도시주택본부장)
- 회부일자 : 2007년 6월 11일
- 심 사
- · 대구광역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 □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7. 7. 6)상정, 수정안 가결.

#### 2. 주요골자

-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 방안을 신설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이하 지역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 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7호).
- 다.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주변의 교통·경관·일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지역보다 완화하고자 함(안 제79조의 2, 안 제84조제1항).
- 라.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균형 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 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에 대해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을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 게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비되고 추가로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3. 근거법령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제113조, 동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제82조·제84조·제85조 및 제114조
- 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제52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30조
- 다.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4.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주택본부장 정명섭)
- □ 금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 지난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를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이들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고자 하며「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이 정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
  -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전부 개정하 게 되었음.
-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방안과 평균층수 제도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이하 지역을 지정·고시토록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함.

7 8	내	용	ᆀ 다 이 이 첫	
구 분 	평균층수	최고층수	해 당 위 원 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층	15층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 비 구 역	15층	_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15층	_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 역 균 형 개 발 사 업 지 구	15층	_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 둘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은 일반지역보다 10%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은 현행 조례에서는 6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400%~500%이하로 조정되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00%이하로 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500%이하로 정하고자 하며
- 셋째,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까지 완화하고자 하며
- 네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 다섯째, 상위법령(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허용건축물이 정비되고 추가로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2007. 5. 10부터 5. 30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열람자는 773명이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40건이었음.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층수 15층으로 요구하는 의견 (18건)과 최고층수를 19층까지 변경요구하는 의견(5건) 그리고, 금번 조례와 무관한 최고고도지구 폐지 및 용도지역 변경요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평균층수제도는 반영하고 나머지 22건의 의견은 미반영하였음.

- 그 후 규제개혁 사이버위원회 (2007. 6. 1 ~ 6. 5) 심의과정에서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의 대형마트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항이 심의 보류되었으며
  -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07. 6. 26)
  - · 내 용 : 준주거·준공업지역안에서의 대형마트 건축제한
  - 결 과 : 원안가결
- 조례·규칙심의위원회(2007. 6. 8)에서는 원안 가결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
- 5. 검토보고 요지(보고 : 전문위원 하재열)
  - □ 본 조례안은
    - 2003.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를 조례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이하 건축물에 대한 층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종세분 당시의 기본취지 유지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을 조정하며,
    - 2005. 11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비함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그 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안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항 내지 제2항은,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가 7층이하로 제한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층, 15층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으며, 이는, '03.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시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주변여건 및 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2005. 1. 15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종세분 당시의 취지를 살리고 바람직한 주거환경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도시계획조례상에 건축물의 층수(7층이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여 층수제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역균형개발 사업지구 등에 대해서는 해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제한(7층)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현 행(도시관리계획)	변 경(조례 신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에 대한 규정 없음	●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이하로 규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층수를 7층이하로 규정
(최고고도지구 7층이하)	● 다만, 7층이하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신천, 고속국도 100m내외	거쳐 층수완화(12, 15층)
▶금호강, 유원지 200m내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평균층수 12층이하, 최고층
▶산지형 공원 300m내외	수 15층이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양호한 저층주택지역 등	▶정비구역,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지역균형개발사업지
	구 : 15층이하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 안 제79조의 2 (건폐율의 특례)와 안 제84조 제1항 (용적률 규정)은,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음.

이는,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건폐율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7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90% 이하로 일반지역보다 각각 10% 상향 조정하였고, 용적률은 현행 조례에서 6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특별법이 개정되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00%이하로,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음.

- 건폐율 규정 < 안 제79조의 2 > -

구 분		국토계획법 시 행 령	재래시장특별법 시 행 령	도시계획 조례			
				일반지역 (조례 제75조)	재래시장		
					현행	개정안	
일반주거	제1종	60%	60 ~ 70%	60%	_	70%	
	제2종	60%		60%	П	70%	
지 역	제3종	50%		50%	-	60%	
준주거지역		70%		60%	_	70%	
준공업지역		70%		70%	1	_	
	중심	90%	70 ~ 90%	80%	-	90%	
상 업 지 역	일반	80%		70%	_	80%	
	근린	70%		70%	_	80%	
	유통	80%		70%	-	80%	

## - 용적률 규정 < 안 제84조 > -

				도시계획 조례			
구	분	국토계획법 시 행 령	재래시장특별법 시 행 령	일반지역	재래시장		
				(조례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1종	100~200%		200%			
	제2종	150~250%		220%	600%	400%	
	제3종	200~300%	400 ~ 500%	250%			
준주거지역		200~500%		250,300%(비주거용 400%)		500%	
준공업지역		200~400%	350 ~ 400%	400%	_	_	

- 안 제84조 제2항은 구·군간의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지역보다 15%를 가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지역간 불균형 개발문제를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3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3항 및 제4항은 2007.4. 4 건설교통부의 조례 개정을 위한 준칙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건설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에 대해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한 것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다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별첨 1 -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 정비사항)

-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4개 용도군 21개의 건축물의 종류가 신설되었으며, 용도 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의 규정은 지역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의 규정을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

는 범위에 따라 신설된 건축물의 종류가 기 조례에서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5개 종류 건축물(지역아동센터, 직업훈련소, 집배송 시설, 위험물 취급소, 도료류 판매소)의 경우에는 기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질서에 부합되게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장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역안에서 허용되던 첨단업종공장이 현행 읍·면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시장, 구청장·군수가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15,000㎡)의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음.

- 부칙 제2조(기존 조례의 폐지)의 경우는 본 조례안이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금번 정기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3606호, 2003. 10. 10)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이도 기존의 조례는 폐지되므로 삭제하고, 부칙 제3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에 관한적용례)내지 11조(다른조례와의 관계)를 각각 부칙 제2조(도시관리계획 결정등에 관한 적용례) 내지 10조(다른조례와의 관계)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는 2007. 5. 10부터 5. 30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0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18건을 반영하고 22건을 미반영 하였음(별첨 2).

또한,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2007. 6. 7)와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2007. 6. 8)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 6.11 의회에 제출된 것임.

[별첨 1]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건축물 정비사항

용도지역	허 용 건 축 물
제 1 종 전 용 주 거	· 신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허용
제 1 종 일 반 주 거	· 신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허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 판매소 허용 (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제 2 · 3 종 일 반 주 거	<ul> <li>변경</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허용</li> <li>신설</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 판매소 허용</li> <li>(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li> </ul>
준 주 거	·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불허,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 운수시설 중 집배송시설 허용
중 심 · 일 반 상 업	·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불허,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근 린 상 업	·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불허,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 운수시설 중 3천㎡ 이상 집배송시설 허용
유 통 상 업	· 변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허용 · 신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불허,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전 용 공 업	· 신설 - 운수시설 중 집배송시설 허용

# 324 (第161回-第4次附錄)

	용 도	지 역		허 용 건 축 물	
생	산	녹	지	<ul> <li>· 변경</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허용</li> <li>- 자동차관련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정비관련) 허용</li> <li>· 신설</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li> <li>- 첨단업종의 공장 허용('07. 4. 19 공포)</li> </ul>	
자	연	녹	지	· 신설 - 운수시설 중 집배송시설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보	전 · 생	산 관	리	<ul> <li>· 신설</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li> <li>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li> <li>· 변경</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허용</li> </ul>	
계	회	관	리	· 신설  - 운수시설 중 집배송시설 허용  - 공장 중 시장, 구청장·군수가 공장 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15,000㎡ 이상)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관			리	· 신설 - 운수시설 중 집배송시설 허용 · 변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허용(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함)	
농			림	· 변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허용	

# [별첨 2]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접수 처리현황

반 영 요 의 견 지 제 출 자 여 부 건축주택팀장,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외 16 · 정비사업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 반 영 15층 이하를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변경(18건) 정비사업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 15층 이하를 평균층수 15층 이하, 최고층수 19층 미반영 전제원외 4 이하로 변경(5건)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2층 이하를 이상무외 2 " 평균층수 15층 이상으로 변경(3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 폐지(5건) 김대곤외 4 준주거지역안에서 대형마트 건축제한 반대(1건) 미반영 김진관 · 기타사항(8건) - 용도지역 변경 요구 (수성구 범어2동 427번지 일원 제1종 오세영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달서구 죽전동 일원 7층지역을 제3종 고도윤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평균층수 산정시 1층 전체가 피로티인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 -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건폐율 "주변의 ·용적률 특례조항에서 교통·경관·미관·일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삭제 -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용적률 완화시 위원회 심의 절차(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삭제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에 권향숙 따른 대책 요구 - 정비예정구역안에서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허용 이응우 건축물 완화허용(2건)

#### 6. 질의·답변 요지

○ 대구광역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 (2007. 7. 6) 상정 의 답 ○ 평균층수 개념은 처음방식을 채택했죠? ○ 건축주택팀에서 검토하고 있음. ○ 34조 2항과 관련하여 평균층수 산정방식을 보 ○ 도로와 직각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 산정방 면 한 동에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등 아파트 배 식을 마련토록 하겠음. 치에 따라서 용적률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 음. ○ 결과적으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용적률을 |○ 더 유리하도록 평균층수를 12층으로 하는 것으 손해보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성이 없어 보임. 로 최고층수는 18층까지 가능함. ○ 평균층수 산정방식을 서울의 사례를 참고한 것 │○ 제시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면 수정하겠음. 인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접수처리현황을 보면 1건 | ○ 합리성이 있는 것을 반영하였음. 만 반영된 것으로 주민의견을 무시한 것 아닌지? ○ 도시계획에서 층수규제를 완전히 완화할 생각 |○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고 지구단위 은 없는지? 계획에 의거 완화기준을 마련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도시계획조례로 층수규정이 필요하면 2종의 경│○ 층수완화와 관련한 영향을 검토한 이후 가능할 우 25층으로 완화할 의향은 없는지? 것으로 생각함. 층수완화에 대한 시행연구와 검토 를 충분히 거친 후 가능할 것임. 장·단점에 대해 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음. ○ 12층이하 층수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 재정비지구와 일반사업지구의 개발 속도 등 영 므로 삭제하고 정비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층수를 25 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층 정도로 충분히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평균층수 산정시 1층 전체가 피로티인 경우는 ○ 현재까지는 제외해 준 경우가 없으며 검토해 보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미반영하였은데 피로티는 바모록 하겠음. 현재 규정에는 1층 전체를 피로티로 람길과 관련이 있고 환경을 좋게하는 것으로 보이|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음. 므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줄 것.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준주거, 준공업지역 안에서 대형마트 등의 건축 ○ 대형마트가 난립되면 지역기여도가 낮아지는 등 제한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이유는? |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대형마트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것이 문제가 ○ 준주거지역에 재래시장이 90%이상 위치해 있어 된다고 보고 준주거, 준공업지역안에서는 문제가 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자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없어 보이므로 자연녹지 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제2종 7층 일반지역에 대한 완화사항은 시민들 ○ 관련용역이 진행중이며 적극 검토하겠음. 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겠음.

○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붙임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함.

##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